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종섭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시킬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퇴교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8680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사관후보생 등의 퇴교 사유와 절차,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술훈련, 유격훈련 또는 주특기훈련이나 후방 부대에서의 경계 등과 같이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이 그 실질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유형에 대한 순직자 분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 1) 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교육성적이 학칙 등에서 정하는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사관후보생 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사관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을 퇴교사유로 규정함.
- 2) 사관후보생 등을 퇴교시키려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퇴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 3)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함.

나. 근속진급 제한 대상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사유 정비(안 제25조의3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 등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일반 법원에서도 군인 등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군인 등에 대한 재판권을 군사법원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속진급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군사법원

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일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정비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를 앞으로는 일반 법원에 기소된 경우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 정비함.

다. 평상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자 분류기준 조정(안 제60조의2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별표 8)

1) 현재 전술·유격·주특기훈련이나 후방 부대에서의 경계 업무 등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2) 그러나, 실무상 순직Ⅲ형에는 체력단련이나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이나 내무생활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등이 주로 해당하는데, 국가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평상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사망을 순직Ⅲ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3) 이에 평상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순직Ⅱ형’
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순직Ⅱ형의 분류기준을 완화하여 합당하게
예우하도록 함.

사항 없음

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예외적 일반사망자로의 분류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0조의23제2항 신설)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순직자’가 아닌 ‘일반사
망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유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군무이탈이나 무단이탈 중에 사망
한 경우, 그 밖에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한 경우를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보훈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 ~ 8. 11., 2022. 1. 3. ~ 2. 14., 20

22. 2. 23. ~ 4. 4., 2022. 4. 4. ~ 5. 16.) 결과, 특기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성적이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의2”를 “법 제54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2-6”을 “2-2-7”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별표 8의 순직 I 형의 2-1-3의 기준 및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사망한 사람

별표 8의 순직Ⅱ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직 Ⅱ형	2-2-1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 또는 2-2-2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훈련, 유격훈련, 주특기 훈련, 그 밖에 유사시(有事時)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4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6	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2-7	2-2-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별표 8의 순직Ⅲ형의 2-3-9의 기준 및 범위란 중 “질병”을 “상이 또는 질병”으로 한다.

별표 10의 2-1-3의 기준 및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

별표 10의 2-3-6의 기준 및 범위란 중 “사망한”을 “상이를 입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60조의23제2항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의 2-3-9의 기준 및 범위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공상자 분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2-3-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상이를 입은 군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퇴교사유) ① 법 제11조의3제3항 및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의 퇴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1.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교육성적이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명령을 위반하여 후보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퇴교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

	<u>당 사관후보생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③ 그 밖에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u>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성이 불량한 사람”이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5조의3(근속진급 제한 대상) -
1. <u>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u>	1. <u>유죄판결을 받은 사람</u>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
1. <u>군사법원에 기소되었을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u>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예정대로 진급시키며, 진급 예정일이 지났을	1. <u>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u> -----

	때에는 무죄로 확정된 날 이후 첫 진급 시에 발령한다. 2. 3. (생략) ② (생략)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 (생략) 나. 순직Ⅱ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2-1부터 2-2-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다. (생략) 3. ~ 6. (생략) <신 설>	----- ----- -----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제1항----- -----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u>2-2-7</u>----- ----- 다.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u>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한</u>
--	---	--

	경우
	2.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중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
	는 개인적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243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연 락 처	(02) 748 - 5121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연 락 처	(02) 748 - 3092